학칙 시행규칙(특수대학원)

(최종개정일 2023.11.1.)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시행규칙은 명지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있어 특수대학 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시행규칙에서 "특수대학원"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의 설립정신과 교육목표에 따라 설치한 통합치료대학원, 산업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부동산대학원, 경영대학원 등의 대학원을 말한다.(변경 2003.3.1, 2005.3.2, 2005.8.1, 2006.4.17, 2009.10.1., 2011.10.1., 2019.7.1.)
- 제3조(교육목적) 각 대학원의 교육목적은 다음과 같다.
 - 1.(삭제 2005.3.2)
 - 2.통합치료대학원 : 각종 통합치료기관과 시설에서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하는 치료전문가와 평생교육사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변경 2019.7.1.)
 - 3.산업대학원 : 산업기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양성한다.
 - 4.교육대학원 : 교육현장에 적합한 교육이론과 다양한 교수법을 연구·개발하고 교원으로서 의 사명의식과 교과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자질을 향상시키며, 창의적인 실무능력을 제고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유능한 교육전문가를 양성한다.
 - 5.(삭제 2003.3.1)
 - 6.(삭제 2005.3.2)
 - 7.사회복지대학원 : 사회복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교수·연구하여 복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한다.(변경 2003.3.1)
 - 8.(삭제 2006.11.29)
 - 9.문화예술대학원: 21세기 문화예술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행사, 공연예술 기획, 공연예술단체 운영, 예술품의 과학적 규명 및 기타 문화행사에 대한 정보·기획과 예술품에 대한 체계적인 감정능력을 배양하고, 문화사업의 전문 인력, 문화원 및 예술원의 기획담당자, 문화예술 공연장 관리자, 예술품 감정 요원 등 창의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 10.(삭제 2005.3.2)
 - 11.부동산대학원 : 부동산 분야의 전문지식과 이론 및 실무를 균형 있게 교수·연구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신설 2005.3.2, 변경 2005.8.1, 2011.10.1)
 - 12.(삭제 2009.10.1)
 - 13.경영대학원 : 경영 및 유통물류 분야의 전문지식을 교수·연구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신설 2011.10.1.)

제4조(과정) ①각 대학원에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②각 대학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과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학사운영 제 1 절 신입학

- **제5조(입학자격)** ①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
 - 2.기타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②(삭제 2009.1.1)
 - ③교육대학원 양성과정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사과정에서 동일 또는 관련 학과(전공)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재교육과정 전공자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변경 2019.6.1.)
- 제6조(정원외 입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의 자격을 갖춘 경우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변경 2009.1.1)
 - 1.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변경 2013.8.1)
 - 2.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변경 2009.1.1)
 - 3.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변경 2009.1.1)
 - 4.(삭제 2009.1.1.)
- 제7조(지원절차) 입학(편입학 포함)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입학원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출한 서류와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다.
- 제8조(입학전형) ①입학전형은 정시전형과 수시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②입학전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구술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9조(입학허가) ①입학(편입학 포함)은 대학원장의 상신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10조(입학자의 구비서류) (삭제 2009.1.1)

제 2 절 편입학

제11조(편입학 인원·자격) ①편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편입학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학위과정	편입학기	전적대학원			
		등록학기	이수학점		
석사	2	1학기 이상	6학점 이상		
	3	2학기 이상	12학점 이상		

제12조(편입학 전형) 편입학 지원 절차, 전형방법, 편입학의 허가 및 입학자의 구비서류는 신입학 전형에 준하여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절 재입학

제13조(재입학의 허가)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매 학기 초 등록기간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재입학의 불허) 퇴학 또는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입학할 수 없다.

- 제15조(재입학의 절차) ①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 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07.7.1)
 - ②재입학은 소속 대학원장, 교학처장, 해당학과(교육대학원은 전공) 주임교수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변경 2007.7.1, 2009.1.1)
 - ③재입학 지원자가 여석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적 전의 학업성적 순으로 허가한다.
 - ④재입학 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절 휴학·복학 및 전과

- 제16조(휴학) ①재학 중 질병, 의무군복무, 모성보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변경 2014.3.1)
 - ②학기 중에 휴학할 경우 수업일수가 5분의 4미만일 때에는 당해학기의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의 경우는 3분의 2미만으로 한다.(변경 2007.6.1.)
- 제17조(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일반휴학 : 질병, 사고, 가정 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 2.군입대휴학 : 교육소집 또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군에 입대하는 경우
 - 3.모성보호휴학 :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신설 2014.3.1.)
- 제18조(휴학절차) ①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주 이상의 질병 또는 사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군입대 휴학자는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 야 하며, 일반휴학 중에 입대할 경우에는 다시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모성보호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진단서,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일)를 첨부하여 모성보호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3.1.)
- 제19조(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된 자는 소정기간 내에 복학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군입대휴학일 경우 학기 초 4주 이내의 전역 예정자에게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 제20조(전과) 전과는 동일 대학원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수학점은 전입학과의 교과과 정에 해당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 5 절 등록 및 수강신청

- 제21조(등록)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 장이 따로 정한다.
- 제21조의2(등록금 반환) (조신설 2008.11.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반환기 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 1.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입학을 허가받은 자가 입학 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 3.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 4.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5.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 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제21조의3(등록금 반환기준) (신설 2008.11.1) ①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하다.(변경 2011.3.1)
 - ②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등록금은 다음에 의하여 반환한다.(변경 2011.3.1)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제22조(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학기당 수 강학점 수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4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변경 2007.3.23)

2.1학점 이상 3학점 이하 : 등록금의 2분의 1(변경 2007.3.23)

3.(삭제 2007.3.23.)

제23조(연구등록) 학위과정에서 소정의 등록을 마친 자가 논문연구와 실험 및 학위논문 작성을 위하여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려면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수강신청)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수강신청 기준학점) 매 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한다.(변경 2014.3.1., 2017.3.1) 1.통합치료대학원 언어치료학과 3,4학기 재학자 중 학부과정에서 동일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자 (신설 2017.3.1., 변경 2019.7.1.)

2.경영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 전공자(신설 2022.4.1.)

제26조(수강신청 변경·포기) 수강신청과목의 변경은 불허한다. 다만, 수강신청과목의 폐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 변경 또는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재수강) ①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은 재수강할 수 있다.

②재수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강신청 전에 재수강신청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2007.7.1)

제 6 절 학적부 및 제 증명

제28조(학적부 기재사항) ①학적부에는 학생의 인적사항, 학적변동, 상벌, 성적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②학적부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07.7.1.)

제29조(보관·보존) ①학적부는 재학생의 경우에는 입학년도별, 학과(전공)별로, 졸업생의 경우에는 졸업년도별, 학과(전공)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다.

②학적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제 증명서 발급) ①제 증명서는 다음과 같이 발급한다.(변경 2009.1.1)

1.학위수여증명서 : 학위를 수여받은 자

2.학위수여예정증명서 : 수료 또는 수료예정자로 당해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예정인 자

3.수료증명서 : 수료에 필요한 학점과 성적을 취득한 자

4.수료예정증명서 : 당해학기에 수료에 필요한 학점과 성적을 취득예정인 자

5.재학증명서 :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6.재적증명서 : 우리 대학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7.휴학증명서 : 휴학 중인 자

8.성적증명서

9.교직과정 이수(예정)증명서 : 교직과정을 이수한(이수예정인) 자

10.기타 제 증명서

②제 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 3 장 교육과정 제 1 절 교과과정 및 학점취득

제31조(교과과정 면성) 각 대학원 교과과정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대학원 장이 이를 확정한다.

제32조(최소이수학점) ①졸업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 1.석사학위청구논문(이하 "학위청구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변경 2009.1.1, 2009.10.1, 2010.1.1)
- 2.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30학점 이상을 이수 하여야 한다. (변경 2003.3.1, 2005.8.1, 2006.9.1, 2007.6.1, 2008.12.1, 2009.1.1, 2009.10.1., 2010.1.1., 2020.11.1.)
- 3.경영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2.4.1.)
- ②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여 교육대학원에서 자격증표시과목과 관련된 소정의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영역 21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영역 12학점, 교직소양과목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이상)을이수하여야 하며, 교직과목의 이수요령과 이수과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변경 2008.12.1., 2019.6.1.)

- 제33조(교과목의 학점단위) 대학원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의 학점단위는 2학점 또는 3학점으로 한다.
- 제34조(교과목의 개설·변경) ①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은 주임교수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하다.
 - ②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임교수가 해당 교과목의 강좌를 개설하기 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5조(논문지도과목)** ①대학원에 따라 논문연구를 위하여 논문지도과목을 이수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②논문지도과목은 학기당 1P로 하고, 1P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기준학점과 졸업이수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변경 2009.1.1)
 - ③논문지도과목의 담당교수는 지도교수로 하고, 이수여부는 합격(P) 또는 불합격(N)으로 평가한다.
- 제36조(추가이수과목) ①학사과정의 전공학부(과)와 다른 학과(전공)의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는 학과(전공)가 지정하는 6학점 이내의 전공과목을 석사과정의 최소이수학점에 추가로 이수하 도록 부과할 수 있다.(변경 2009.1.1)
 - ②추가이수 여부와 추가이수과목은 학생이 입학하기 전에 해당학과(전공) 주임교수가 정한다.
 - ③추가이수 대상자는 주임교수가 지정한 교과목을 학사과정 또는 대학원에서 수강신청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④추가이수과목은 입학하기 전에 하위과정 도는 동등과정에서 학과가 인정하는 동일 또는 유사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추가이수학점을 감할 수 있다.(변경 2007.7.1, 2009.1.1)
 - ⑤ 추가이수과목은 제25조의 학기당 취득학점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제37조(강좌 개설·폐강) ①학과(전공) 주임교수는 편성된 교과과정 중에서 개설과목을 개강 2주 전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대학원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개설강좌를 폐강할 수 있다.
- 제38조(수업) ①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간에도 실시할 수 있다.(변경 2007.6.1)
 - ②수업은 학과 또는 전공별로 실시한다.
 - ③대학원장이 지정하는 교내·외 대학(원)간의 협동강의를 개설할 수 있다.

- ④각 대학원별로 온라인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11.1.)
- 제39조(학점인정) 각 교과목 성적이 등급 CO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학점으로 인정한다.
- 제39조의 2(현장학습 학점인정) 대학원장이 정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소정기관에서 현장학습을 이수한 학생에게 성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의 시행방법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3.1.)
- 제39조의 3(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조신설 2019.6.1.) 학사과정에서 최소졸업학점의 1/2이상을 취득하고 대학원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6학점 이내에서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석사과정에 입학할 경우 6학점까지 대학원 이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39조의 4(석사과정 학생의 학사과정 교과목 수강)(조신설 2019.6.1.) 석사과정의 학생이 학사과정에서 이수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하여 대학원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6학점 이내에서 학사과정 교과목을 수강하고 이를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39조의 5(타 학과 교과목의 수강)(조신설 2023.11.1.) 학생은 소속학과 주임교수의 승인 후, 소속대학원내 타 학과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으며, 이수할 수 있는 학기당 학점은 소속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다만, 학문 성격이 유사한 학과 간에 공동으로 개설한 교과목은 소속학과의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 제40조(타 대학원의 학점인정) ①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교과목에 한하여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나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변경 2004.3.1., 2023.11.1.)
 - ②타 대학원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이내로 한다. 다만, 우리 대학교 대학원 간 이수할 수 있는 학기당 학점은 소속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변경 2019.6.1.)
 - ③학점인정을 원하는 자는 관련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 2007.7.1.)
- 제41조(편입학생의 학점인정) 편입학생의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해당학과의 교과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학기당 6학점 범위 내에서 주임교수의 학점인정 심의와 대학원 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변경 2010.1.1.)
- 제42조(전과·전공변경 학생의 학점인정) 전과학생의 학점인정은 전출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전입학과의 교과과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학기당 6학점 범위 내에서 학과 주임교수의 학점인정 심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과통합 또는 학과 내에서 전공이 변경된 자는 종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변경 2010.1.1)

제 2 절 시험 및 성적

- 제43조(시험) 시험은 매 학기 수시시험과 학기말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44조(성적평가표 제출) 각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학기 성적평가표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교과목 담당교수는 사전에 대학원장과 협의하여 학사업무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2007.7.1.)
- 제45조(성적표시) 각 교과목의 성적은 등급으로 표시하고, 평균성적은 가중평균치법을 사용한 평점으로 표시하다.
- 제46조(평균성적의 산출) 평균성적은 각 교과목의 학점수와 평점을 곱한 평점합계를 신청학점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 **제47조(성적의 취소)**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성적은 취소한다.(변경 2008.9.1)
 - 1.무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당해학기 성적
 - 2.시험 중 부정행위자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학기 성적 또는 해당과목 성적
 - 3.수강신청서 미 제출자의 성적
 - 4.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의 성적
 - 5.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 ②재학생은 등급이 C+이하인 교과목 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 제48조(성적의 정정)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학생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담당교수가 성적 이의신청에 의하여 성적정정을 요청할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 제49조(성적의 이의신청) ①매 학기말에 제출되는 성적평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이의신청은 담당교수가 성적정정원을 교학처에 제출한다.(변경 2007.7.1)
 - ③대학원장은 이의신청된 성적을 심사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제 3 절 수 료

- 제50조(과정수료) ①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수업연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는 과정수료를 인정한다.(변경 2006.9.1., 2022.4.1.)
 - ②수료성적은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한다.
 - ③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한다.

제 4 절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

- **제51조(주임교수의 직무)** 주임교수는 해당학과(전공)의 교과목 개설 및 변경, 강좌개설, 지도교수 제청, 기타 각종 학사업무를 관장한다.
- 제52조(주임교수의 임명) 주임교수는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사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부(과)와 전공이 일치하는 학과(전공) 주임교수는 학사과정의 학과(전공) 주임교수가 그 업무를 담당한다.(변경 2010.1.1.)
- **제53조(지도교수의 직무)** 지도교수는 해당학생의 수강신청을 포함하여 학사 및 학업을 지도하고, 논문연구와 실험 및 학위논문의 작성을 지도한다.
- 제54조(지도교수의 자격) 지도교수는 전공분야가 동일한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할 수 있다.(변경 2009.1.1.)
- 제55조(지도교수의 위촉) 지도교수는 해당학생의 2학기말에 학생의 의견 및 전공분야를 참작하여 주임교수의 제청에 의해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 제56조(지도교수의 변경) 지도교수의 질병, 장기 국외출장, 휴직 등의 사유로 학생지도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 5 절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 제57조(외국어시험) ①학위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는 전공분야 연구에 필요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원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변경 2008.9.1)
 - ②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를 교학처에 제출하고,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변경 2007.6.1, 2007.7.1)
 - ③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④외국어시험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58조(종합시험) ①학위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자는 전공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의 습득정도를 평가하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는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변경 2010.1.1., 2022.4.1.)
 - ②종합시험 과목은 전공과목 중에서 2개 과목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통합치료대학원에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와 교육대학원 학생은 교직과목을 포함하여 3개 과목 이상으로 한다.(변경 2019.7.1.)
 - ③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석사과정 18학점을 평균평점 3.0 이상으로 이수한 자
 - 2.4학기 이상 등록한 자(변경 2006.9.1, 2009.10.1)
 - 3.(삭제 2008.9.1)
 - ④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응시원서를 교학처에 제출하고, 소정의 수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변경 2007.6.1, 2007.7.1)

- (5)종합시험은 각 교과목에 대하여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⑥종합시험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시험의 시기) 외국어시험은 3월과 9월에 실시하고, 종합시험은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

제 4 장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 제 1 절 학위청구논문 체제

제60조(논문체제 등) ①학위청구논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갖추어져야 한다.

- 1.표제지 : 소정의 규격
- 2.인준서
- 3.목차
- 4.표목차 및 그림목차 : 필요시
- 5.본문
- 6.참고문헌
- 7.부록 : 필요시
- 8.논문초록
- ②학위청구논문의 규격, 서식, 분량 등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③학위청구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 관련 전공자는 해당 전공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논문은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변 경 2010.1.1)

제 2 절 학위청구논문 제출

- 제61조(논문 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1.5학기 이상 등록하고,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학기에 취득예정인 자(변경 2006.9.1., 2022.4.1.)
 - 2.외국어시험(외국어시험을 시행하는 대학원에 한함)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변경 2020.11.1.)
 - 3.소정의 논문지도과목을 이수 또는 이수예정인자(해당 대학원에 한함)
 - 4.지도교수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을 받은 자
- 제62조(논문 제출시기) 학위청구논문은 5월 또는 11월에 제출한다.
- 제63조(논문 제출부수·절차) 학위청구논문 제출 승인서와 연구윤리준수확인서를 첨부하여 학위 청구논문 5부를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변경 2007.7.1., 2014.10.1., 2015.11.1.)

제64조(조 삭제 2004.3.1)

제 3 절 학위청구논문 심사

- 제65조(학위논문심사위원회 구성) ①학위청구논문 심사와 구술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3인으로 학위논문심사위원회(이하 "논문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 ②논문심사위원회는 우리 대학교의 전임교원 또는 타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변경 2009.1.1)
 - ②대학원장은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1명을 위원장으로 지정하여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의 진행을 주재하게 한다. 다만, 위원장은 논문심사에 있어서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며, 지도교수는 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
- 제66조(논문심사위원의 교체금지)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논문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제67조(논문심사) ①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1차로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을 심사하여 논문을 수정·보완하게 하며, 2차로 논문내용의 공개발표를 통하여 공개구술시험을 실시한다.
- 제68조(논문심사자료의 제출) 논문심사위원이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논문 제출자에게 인용한 문헌이나 그 번역본, 참고 될 논문, 도형, 표본,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69조(심사위원의 정족수) 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 제70조(논문심사기간·기간연장) 학위청구논문(공개구술시험 포함) 심사는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위청구논문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 장의 승인을 얻어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1조(논문심사의 판정) 논문심사와 공개구술시험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한다.
- 제72조(논문심사의 결과보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위원장은 지정된 기일까지 논문심사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73조(학위수여의 확정)** ①석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변경 2009.1.1)
 - 1.제32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변경 2003.3.1, 2006.9.1, 2009.1.1)
- 2.5학기 이상(경영대학원 글로벌경영학과는 3학기 이상) 등록하고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변 경 2006.9.1., 2022.4.1.)

3.외국어시험(외국어시험을 시행하는 대학원에 한함)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변경 2020.11.1.) ②대학원위원회는 석사학위 수여여부를 결정하고, 대학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학위 수여를 확정한다.(변경 2009.1.1.)

제74조(학위논문 제출) ①학위수여 확정자는 학위청구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보완하고, 대학원의 소정규격에 따라 제본한 학위논문 4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중 3부는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변경 2008.11.1., 2021.3.1.)

②학위논문은 논문심사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2007.7.1., 2014.10.1.)

제 5 장 졸 업

제75조(학위수여)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수여의 결정을 받은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변경 2009.1.1.)

제76조(학위기) 석사학위기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 6 장 장학금 및 학생활동

- 제77조(장학금)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78조(원우회)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건전한 학풍의 조성과 자치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각 대학원에 원우회를 둘 수 있다.
- 제79조(학생 준수사항 및 상벌) ①학생은 학칙과 이 시행규칙을 준수하고, 소속 대학원장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 ②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현저하게 타의 모범이 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 ③학생이 학칙 등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 계할 수 있다.

제 7 장 공개강좌 및 연구과정 제 1 절 공개강좌

- 제80조(공개강좌) ① 직무교육 또는 연구상 전문적인 학식·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할 목적으로 대학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②공개강좌를 이수한 자에게는 소정의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공개강좌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기구 및 조직을 구성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이 기획조 정실장에게 요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변경 2006.1.5)

④공개강좌의 개설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절 연구과정

제81조(연구과정) 대학원에 수업년한을 1년으로 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 제82조(입학자격) 연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해당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 또는 연구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1.4년제 대학 졸업자
 - 2.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제83조(조 삭제 2010.1.1.)

제84조(수료증) (조명변경 2009.1.1) 연구과정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변경 2009.1.1)

제 8 장 운영위원회

- 제85조(구성) ①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대학원이 신설된 경우 당해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대학원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다.
 - ②운영위원회는 대학원장, 대학원 교학처장과 대학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변경 2007.6.1, 2007.7.1)
 - ③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8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학과(전공)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 3.입학, 수료, 졸업에 관한 사항
 - 4.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5.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6.공개강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7.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 8.대학원 또는 위원회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9.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7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88조(준용) 이 시행규칙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학칙시행규칙(학사과정)을 준용하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2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시행규칙 시행과 동시에 특수대학원학칙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논문 제출시한 삭제에 따른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이전 논문 제출시한이 경과하여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지 못한 수료자에게도 변경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최소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자는 종전의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6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6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시행규칙 시행당시 기록과학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학칙시행규칙(특수대학원)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후 칙

이 시행규칙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후 칙

이 시행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당시 제32조 제2항은 2009년 3월 1일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제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당시 국제대학원 경배와찬양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2011년 2월까지는 종전의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 및 제3조의 부동산대학원 명칭변경 및 경영대학원 신설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최

이 시행규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사회교육대학원 명칭변경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②(사회교육대학원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사회교육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종전의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61조(논문 제출자격) 제2호 및 제 73조(학위수여의 확정) 제1항 제3호는 2021학년도 재적생(수료생 포함)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석제 호				
	हो	위	2]	
			<u></u>	<u></u> 월 일생
			석사학위과정(○	
<u>이수하고 대학원</u> 이를 인정함.	위원회 심의를	거쳐 () () ()	<u>학</u>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녕	월 일	!	

명지대학교 ○ ○ 대학원장 ○ ○ 박사 ○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명지대학교 총장 ○ ○ 박사 ○ ○ ○ (직인)

학위번호 : 명지대 00 (석) 000

수 료 증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 ○ ○ 대학원 ○ ○학과(전공)에서 ○년간의 연구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를 증명함.

년 월 일

명지대학교 ○ ○ 대학원장 ○ ○ 박사 ○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명지대학교 총장 ○ ○ 박사 ○ ○ ○ (직인)